

## 시론



김태규

- 현)변호사 김태규 법률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의 정치과잉과 코드인사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렇게 세종류로 나뉜다. 법원은 세 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진 법관으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구조이다. 그 임명 방법은 헌법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관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관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관사에 대하여는 다시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등의 표현이 그러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법원까지 고려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관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배석판사 등으로 더 복잡하게 분류된다. 기관장인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지원장까지 더하면 법원은 복잡한 직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전문관료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많은 직급 중에 소멸하는 직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판사가 되면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시작해서 대과 없으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게 된다. 그다음이 문제인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관성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던 것이 종전의 방식이다. 과거 인사철만 되면 법관들 사이에 최고 관심사는 올해는 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는가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의 예우가 따르면서 관용차와 기사가 딸리게 된다. 연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법원장이 된다. 이런 탓에 우수한 많은 법관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정을 담아 애를 쓴다. 자신이 한 판결이 상급심에서 과기(破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고 판례를 찾고, 월간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 못하면 정년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소속 지원장을 하면서 법관 생활을 마쳐야 한다. 철저한 관료조직이고 성과를 내야 승진과 좋은 보직을 보장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료제적 운영이 법관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지나친 경쟁의식을 부추기며, 속도 위주의 재판으로 시민들에게 재판에 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결국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법원조직법 제30조를 보면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고 하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27조를 보면 고등법원에도

부(部)를 둔다는 규정이 있으면서 부장판사를 둔다는 규정이 없다. 대신에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동급인 고등법원 판사를 뽑아 그들 3인으로 재판부를 만들고 그중 한 명이 재판장을 맡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까지는 관료제의 폐해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명분 삼아 일단의 법관들은 관료제 자체를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반드시 폐지돼야 할 제도처럼 몰아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관료제적 요소를 없앴다는 취지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법원장 추천제’이다. 관료제의 폐단을 없애고 법관들이 원하는 법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다. 각급 법원의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해 2~3명 정도의 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에 올리면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한 명을 낙점하는 방식이다. 얼핏 조직 구성원의 의중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니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 종전의 방식에 따르면 누가 법원장으로 임명될지 대체로 예측된다. 관행이 있어 엉뚱한 인사가 임명되면 임명권자도 그 저의를 의심받게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원칙이 법관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법원장이 되기 위해 예민하게 눈치 보는 일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법관의 독립된 판단에도 다소 기여(寄與)한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종전의 방식이 불편할 수 있고, 이것을 깨는 방법은 법관들에게 그 권한

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종전 방식의 대상자들을 후보군에서 모두 배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명분도 없고 관행을 피하는 실리도 챙긴다. 추천 후보가 2~3명이면 그 안에 충분히 원하는 후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담보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법원 안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성향의 학회가 존재하고, 그 정치적 편파성과 서로 끌어주기 행태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별칭이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법원 내에서 10~15%의 법관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관들의 미래알 같은 성향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직화 된 소수가 법원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들이 복수의 후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후보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 가능하고, 대법원장이 그 한 명을 골라 법원장에 임명하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차관급인 춘천법원장에서 대법관이나 장관급 직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이 된 유일한 경우이다. 비교적 작은 법원의 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까지 올랐으니, 당연히 법원 내 장악력이 약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면 어렵다. 법원장 추천제는 이러한 관행을 파괴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분석을 지나친 기우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 법관 인

사만 보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기수를 파괴하면서 중요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코로나 시국에 집회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 판결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등으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가는 사정을 고려하면 행정법원의 비중은 무시하기 어렵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특이하다.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사법적폐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을, 울산시장선거 부정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을 각각 법관들의 최고 희망지인 서울중앙법원에 근무하였다. 보통 2~3년 근무하는 인사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과거의 승진 방식이 성적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이 공식이 바뀌었다.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지금의 법원은 내가 알던 법원이 아니라면서 불멘소리를 하는 것도 이런 사정에서 연유한다. 이제 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문을 작성하기보다 법관 동료들의 인심을 얻고 대법원장의 코드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역대 대법원 중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대법원이 없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대법원장과 정치적 성향이 맞는 법관을 법원의 요직에 배치하며, 법원 내에 특정학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학회 소속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 사법 적폐의 청산이라는 모호한 정치보복에 대법원이 나서고, 구속영장 발부나 형사처벌의 내용이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법원이 정치적 아군 구하기에 혼신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로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문의 월 1,500의 자문료를 받고,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것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재 대법원의 정치 과잉이 상당히 기여한 면이 있다. 이제는 대장동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을 가졌다는 이른바 ‘그분’이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의혹이 대두되고 국민이 그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공정은 망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러한 정도의 사정이 불거지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적 행태가 도처에 보이는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기는 어렵다.

법원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원 내 정치조직이 된 학회를 없애고, 인사의 공정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분명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법원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 실패하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기대가 결국 대한민국을 삼킬 것이다.